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7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이순자·최웅식
한명희·이윤희·전철수·김제리
서영진·김진철·김문수·박준희
박래학·유 용·박호근·박기열
김미경·유동균·이병해·오봉수
김구현·김동윤·박진형·김정태
김광수(도봉)·신언근·유광상 의원
(2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이 자치구 사무이지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각호”를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무) 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u>각호</u> 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6조(의무) ----- --- <u>각 호</u> ----- --. 1. ~ 3. (현행과 같음) <u>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u>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는 자는“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4호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는 자는 이에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 및 행사의 횟수 · 시장 화장실 개방 요청건수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최경희

☎ 02-3705-1281

e-mail : hiru90@seoul.go.kr